

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2008-제 호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일자 : 2008. 2.

발 의 자: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일치와 국어맞춤법 등에 의한 자구를 정비하며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치(안 제1조, 안 제14조, 안 제88조)
- 나.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(안 제65조)
- 다. 국어맞춤법 등에 의한 자구의 정비(안 제7조 내지 제9조, 안 제11조, 안 제12조, 안 제15조, 안 제16조, 안 제19조 내지 제21조, 안 제24안 제26조, 안 제28조, 안 제30조, 안 37조, 안 제41조, 안 제46조, 안 49조 내지 제52조, 안 제54조 내지 제56조, 안 제62조, 안 제63조, 안 제65조 내지 제67조, 안 제73조, 안 제75조 내지 제77조, 안 제80조, 안 제81조, 안 제84조 내지 제8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 법령 : 붙임
- 나. 기 타

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「지방자치법」 “제63조” 를 “제71조” 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5일이내” 를 “5일 이내” 로, 제5항 중 “2일이상” 을 “2일 이상” 으로 제6항 중 “긴급을 요할 때에는” 을 “긴급을 필요로 할 때에는” 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1인” 을 “1명” 으로, “2인이상” 을 “2명 이상” 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및 제75조제2항 중 “폐회중” 을 각각 “폐회 중” 으로, 제12조제4항 중 “회기중” 을 “회기 중” 으로, 제15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 중 “휴회중” 을 각각 “휴회 중” 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,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동의를 얻어” 를 “동의를 받아” 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법 “제55조제1항” 을 “제63조제1항” 으로 한다.

제16조제3항 중 “긴급을 요한다고” 를 “긴급을 요구한다고” 로 한다.

제19조제2항 중 “긴급을 요하는” 을 “긴급을 요구하는” 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의결을 얻어” 를 “의결을 받아” 로 한다.

제24조 중 “1인이상” 을 “1명 이상” 으로 한다.

제28조제3항 중 “2건이상” 을 “2건 이상” 으로 한다.

제30조, 제49조제1항제14호, 제51조제1항, 제56조제1항, 제65조, 제66조, 제81조, 제84조제2항, 제86조제5호 및 제8호 중 “기타의” 를 “그 밖의” 로 “기타” 를 각각 “그 밖의” 로 한다.

제37조의2제1항 중 “범위안” 을 “범위 안” 으로 “심의중” 을 “심의 중” 으로 “기타” 를 “그 밖의” 로 한다.

제41조제2항, 제50조제1항 중 “2인이상” 을 각각 “2명 이상” 으로 한다.

제52조제1항 중 “비밀을 요하거나” 를 “비밀이 필요하거나” 로 한다.

제54조조명 중 “본회의중” 을 “본회의 중” 으로 한다.

제55조 중 “찬성자를 요하지” 를 “찬성자를 필요로 하지” 로 “1인이상” 을 “1명 이상” 으로 한다.

제62조제1항 중 “전문지식을 요하는” 을 “전문지식이 필요한” 으로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의” 로 “승인을 얻어” 를 “승인을 받아” 로 한다.

제63조제1항 중 “기타” 는 “그 밖의” 로, 같은 조 제3항 중 “긴급을 요할 때에는” 을 “긴급을 요구할 때에는” 으로 한다.

제67조제3항 중 “기간내” 를 “기간 내” 로 한다.

제73조제2항 중 “10일이내” 를 “10일 이내” 로, “기간내” 를 “기간 내” 로 한다.

제76조제2항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의” 로 같은 항 및 제77조제2항 중 “기일내” 를 “기일 내” 로 한다.

제80조제1호 및 제6호 중 “기타” 를 각각 “그 밖의” 로, “문란시키는”

을 “어지럽히는” 으로 한다.

제85조제1항 중 “각호의 1” 을 “각호의 어느 하나” 로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의” 로 한다.

제87조제2항 중 “허가를 얻어” 를 “허가를 받아” 로, “허가를 얻고” 를 “허가를 받고” 로 한다.

제88조제1항의 법 “제78조” 를 “제86조” 로, 같은 조 제3항 중 법 “제75조” 를 “제83조” 로 “찬성위원을 요하지” 를 “찬성위원이 필요하지” 로 한다.

제89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3일이내” 를 각각 “3일 이내” 로, “알게된” 을 “알게 된” 으로, “5일이내” 를 “5일 이내” 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제71조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7조(청가 및 결석) ① (생략)</p> <p>②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 <p>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<u>2일 이상</u> 결석 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.</p> <p>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<u>긴급</u>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청가 및 결석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 <u>5일 이내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<u>2일 이상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⑥ ----- <u>긴급</u> <u>을 필요로 할 때에는</u> -----.</p>
<p>제8조(의장·부의장의 선거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<u>1인</u>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, 최고 득표자가 <u>2인 이상</u>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	<p>제8조(의장·부의장의 선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1명</u> ----- ----- <u>2명 이상</u>----- -----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
<p>제9조(의장·부의장의 임기) ① (생략)</p> <p>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<u>폐회중</u>에 만료 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.</p>	<p>제9조(의장·부의장의 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폐회 중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1조(의장·부의장의 사임)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<u>동의를 얻어</u>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1조(의장·부의장의 사임) ① ----- ----- <u>동의를 받아</u>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(회기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<u>회기중</u>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.</p>	<p>제12조(회기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<u>회기 중</u> -----.</p>
<p>제14조(회의에 관한 선포) ① (생략)</p> <p>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<u>제55조제1항</u>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4조(회의에 관한 선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제63조 제1항</u>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5조(휴회) ① (생략)</p> <p>② 휴회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.</p>	<p>제15조(휴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휴회 중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6조(의사일정의 작성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의장은 특히 <u>긴급을 요한다고</u>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.</p>	<p>제16조(의사일정의 작성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긴급을 요구한다고</u> ----- ----- -----.</p>

<p>제19조(의안의 제출·발의) ① (생략)</p> <p>②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<u>긴급을 요하는</u>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19조(의안의 제출·발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긴급을</u> <u>요구하는</u> ----- -----.</p>
<p>제20조(의안의 회부)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. 다만, 폐회 또는 <u>휴회중</u>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0조(의안의 회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휴회 중</u>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1조(특별위원회 회부)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<u>의결을 얻어</u>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1조(특별위원회 회부) ① ----- ----- ----- <u>의결을 받아</u>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4조(동의를 의제 성립)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와 <u>1인이상</u>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.</p>	<p>제24조(동의를 의제 성립) ----- ----- ----- <u>1명 이상</u>-----.</p>
<p>제26조(의안·동의를 철회)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,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자가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,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<u>동의를 얻어야</u> 한다.</p> <p>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</p>	<p>제26조(의안·동의를 철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동의를 받아</u>-----.</p> <p>② ----- -----</p>

<p>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<u>동의</u>를 얻어야 한다.</p>	<p>----- <u>동의를</u> 받아 -----.</p>
<p>제28조(안건심의) ① ~ ② (생략)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<u>2건 이상</u>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.</p>	<p>제28조(안건심의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2건 이상</u> -----.</p>
<p>제30조(의안의 정리)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는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·문구·숫자·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</p>	<p>제30조(의안의 정리) ----- ----- <u>그 밖의</u> ----- -----.</p>
<p>제37조의2(5분자유발언)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 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<u>범위안</u>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<u>심의중인</u> 의안과 청원 <u>기타</u>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5분이내의 발언(이하 "5분자유발언"이라 한다)을 허가할 수 있다. ② ~ ④ (생략)</p>	<p>제37조의2(5분자유발언) ① ----- ----- ----- <u>범위 안</u> ----- -- <u>심의 중</u>----- <u>그 밖의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1조(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) ① (생략) ② 의원 <u>2인이상</u>의 발언이 있는 후에는 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. 다만,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. ③ (생략)</p>	<p>제41조(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 <u>2명 이상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9조(회의록의 작성) ① (생략) 1. ~ 13. (생략) 14. <u>기타</u>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(생략)</p>	<p>제49조(회의록의 작성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13. (현행과 같음) 14. <u>그 밖의</u>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<p>제50조(회의록의 서명과 보존) ① 회의록에는 의장,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,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<u>2인이상</u>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. 다만,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 날인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50조(회의록의 서명과 보존) ① ----- ----- ----- <u>2명 이상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1조(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)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<u>기타</u>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51조(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) ① ----- ----- <u>그 밖의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2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. 그러나 의장이 <u>비밀을 요하거나</u> 사회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제52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 ----- ----- ----- <u>비밀이 필요하거나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4조(본회의중 위원회 개최) (생략)</p>	<p>제54조(본회의 중 위원회 개최)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5조(위원회에서의 동의)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<u>찬성자를 요하지</u> 아니하며 동의자 외 <u>1인이상</u>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.</p>	<p>제55조(위원회에서의 동의) ----- ----- <u>찬성자를 필요로 하지</u> ----- ----- <u>1명 이상</u> ----- -----.</p>
<p>제56조(위원회의 제안)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<u>기타</u> 의</p>	<p>제56조(위원회의 제안) ① ----- ----- <u>그 밖의</u> -----</p>

<p>안을 제출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2조(공청회)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<u>전문지식을 요한</u>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·경험이 있는 자 등(이하 "진술인"이라 한다)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p> <p>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·일시·장소·진술인·경비·기타 참고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<u>승인을 얻어야</u> 한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	<p>제62조(공청회) ① -----</p> <p>-- <u>전문지식이 필요한</u> 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 <u>그 밖의</u> -----</p> <p>----- <u>승인을 받아</u> -----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3조(심사보고서의 제출)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와 결과, <u>기타 필요한 사항</u>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. 다만, <u>긴급을 요할 때에는</u>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.</p>	<p>제63조(심사보고서의 제출) ① -----</p> <p>-- <u>그 밖의</u> 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 <u>긴급을 요구할 때에는</u> -----</p> <p>-----.</p>
<p>제65조(위원회 회의록) ① (생략)</p> <p>1. ~ 10. (생략)</p> <p>11. <u>기타</u>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65조(위원회 회의록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<u>그 밖의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6조(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)</p> <p>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, <u>기타</u> 비밀·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·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</p>	<p>제66조(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)</p> <p>-----</p> <p><u>그 밖의</u> -----</p> <p>-----</p>

<p>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의회 밖으로서는 대출하지 못한다.</p>	<p>----- -----.</p>
<p>제67조(예산안 심의) ① ~ ② (생략)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<u>기간내</u>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</p>	<p>제67조(예산안 심의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<u>기간 내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73조(시장에 대한 서면질문) ① (생략)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<u>10일</u>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. 그 <u>기간내</u>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</p>	<p>제73조(시장에 대한 서면질문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10일 이내</u> ----- <u>기간 내</u> ----- -----.</p>
<p>제75조(사직) ① (생략)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. 다만, <u>폐회중</u>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(생략)</p>	<p>제75조(사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폐회 중</u> ----- -----.</p>
<p>제76조(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) ① (생략) ② 피심위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, <u>기타</u> 사고에 의하여 <u>기일내</u>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제76조(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그 밖의</u> ----- <u>기일 내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77조(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) ① (생략)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</p>	<p>제77조(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</p>

<p>하여 심사한다. 다만, <u>기일내</u>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	<p>----- <u>기일 내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0조(회의의 질서유지)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·잡지·간행물·<u>기타</u>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</p> <p>3. ~ 5. (생략)</p> <p>6. <u>기타</u>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</p>	<p>제80조(회의의 질서유지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>----- <u>그 밖의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그 밖의</u> -----</p> <p><u>어지럽히는</u> -----.</p>
<p>제81조(회의장 출입의 제한) 회의장 안에는 의원·공무원·<u>기타</u>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.</p>	<p>제81조(회의장 출입의 제한) -----</p> <p>----- <u>그 밖의</u> -----</p> <p>-----.</p>
<p>제84조(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) ① (생략)</p> <p>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, <u>기타</u>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	<p>제84조(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그 밖의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5조(방청의 권한)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기타</u>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85조(방청의 권한) ① -- 각호의 어느 하나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의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
<p>제86조(방청인의 준수사항) (생략)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신문·<u>기타</u> 서적류의 열독행위</p> <p>6. ~ 7. (생략)</p> <p>8. <u>기타</u>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</p>	<p>제86조(방청인의 준수사항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<u>그 밖의</u>-----</p> <p>6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그 밖의</u>----- -----</p>
<p>제87조(녹음·녹화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회기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<u>허가를 얻어야</u> 한다. 다만, 위원회에 있어서 는 <u>허가를 얻고자</u>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	<p>제87조(녹음·녹화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허가를 받아</u> ----- -- <u>허가를 받고</u> ----- -----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8조(징계의 요구와 회부) ① 의장은 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(이하 "징계대상자"라 한다)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<u>찬성의원을 요하지</u>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.</p> <p>④ ~ ⑤ (생략)</p>	<p>제88조(징계의 요구와 회부) ① ----- <u>제86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제83조</u>----- ----- --- <u>찬성의원이 필요하지</u> ----- -----.</p> <p>④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9조(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) ① 제88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</p>	<p>제89조(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) ①- -----</p>

<p>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,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,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<u>3일 이내</u>에 하여야 한다.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.</p> <p>②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,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<u>알게된 날로부터 5일 이내</u>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<u>3일 이내</u>에 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<u>3일 이내</u> ----- ----- ② ----- ----- ----- <u>알게 된</u> -----<u>5일 이</u> <u>내</u> ----- ----- ----- <u>3일 이내</u> -----.</p>
---	---

관 계 법 령 발 취

<지방자치법>

제71조 (회의규칙)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제83조(모욕 등 발언의 금지) ①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86조 (징계의 사유)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.

<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>

제11조(부위원장) ①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둔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